



기안용지 (전화: )

시행상  
특별취급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시30310-465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92.5

시행장  
395  
글재

보조기관	부시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기안책임자	문승국

협조기관  
법무담당관 심사필  
업조통제관 행정과장

문서번호  
발송인

경유수신참조  
국안참조

발신명의

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건

1.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 본 건은 '92년도 제4차(92.5.14)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 거결된

사항입니다.

가. 도시계획 지역 변경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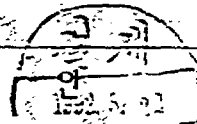
구분	기 (㎡)	변경(㎡)	변경 후(㎡)
총계	665,984,000		665,984,000
일반주거지역	291,712,836.4	증249,795	291,962,631.4
준주거지역	4,022,262.5		4,022,262.5
전용주거지역	5,001,159		5,001,159
상업지역	21,484,930		21,484,930
준공업지역	29,076,533		29,076,533
자연녹지지역	310,742,316.1	감 12,980	310,729,336.1
생산녹지지역	3,943,963	감236,815	3,707,148

끝.

제 2 안

고

서



서울특별시 고서 제

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2. 5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65,984,000		665,984,000
일반주거지역	291,712,836.4	증 249,795	291,962,631.4
준주거지역	4,022,262.5		4,022,262.5
전용주거지역	5,001,159	시강	5,001,159
상업지역	21,484,930		21,484,930
준공업지역	29,076,533		29,076,533
자연녹지지역	310,742,316.1	감 12,980	310,729,336.1
생산녹지지역	3,943,963	감 236,815	3,707,148

나.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양천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끝.

제 3 안 466

수신 총무처장관

제 목 관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연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다. 근거법규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제 4 안 46)
수 신 공보관
제 목 시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시보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연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다. 근거법규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5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같은건
1.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러 일반인에 열람, 도면정리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제반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각 1부. 끝.



수신처 : 양천구청장(도시정비과장)

시장

시	1992. 5. 16	제 157
발령자	시정비과	장부담장
신	지	정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2-162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양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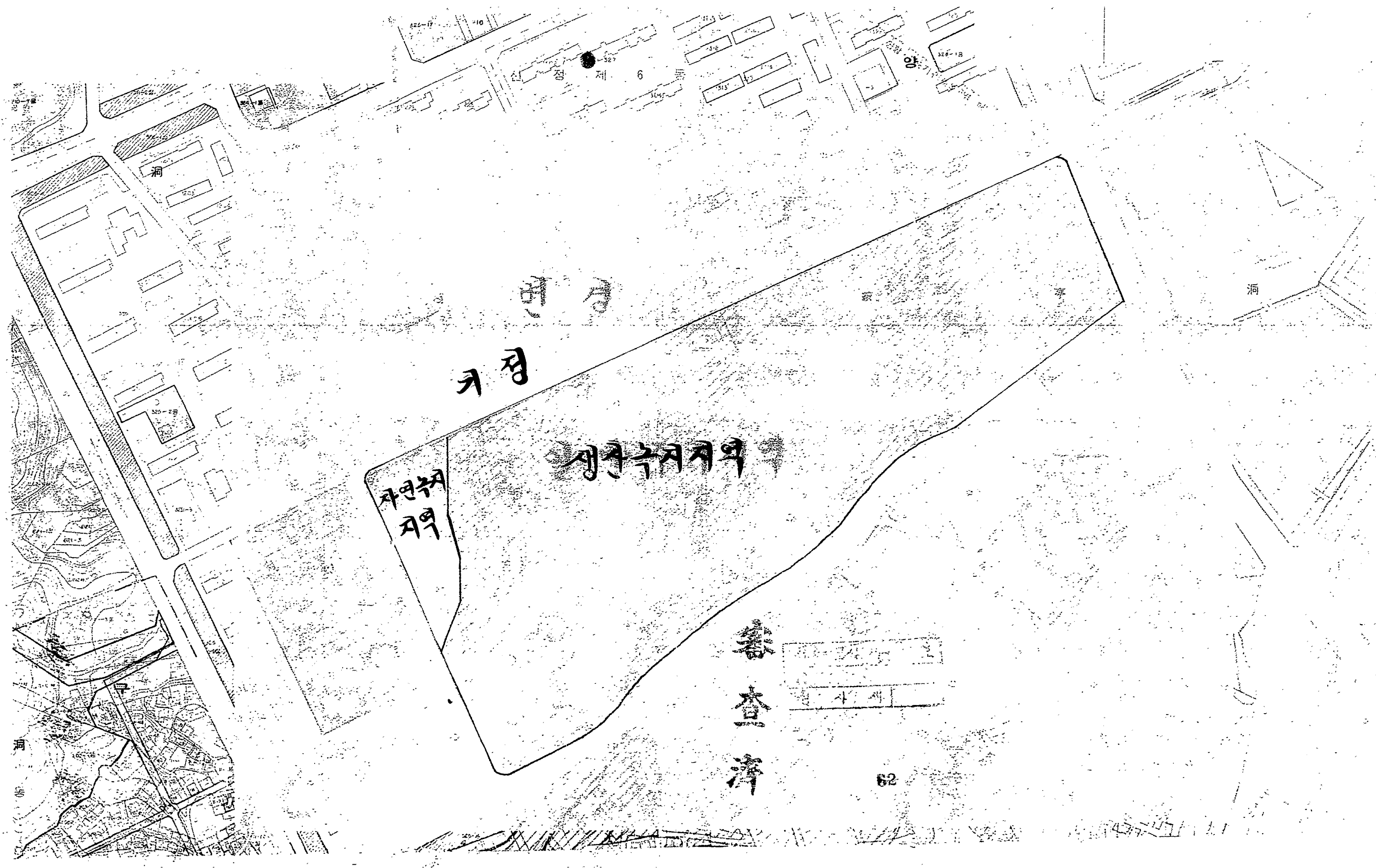
시장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총 계	665,984,000		665,984,000
일반주거지역	291,712,836.4	증 249,795	291,962,631.4
준주거지역	4,022,262.5		4,022,262.5
전용주거지역	5,001,159		5,001,159
상업지역	21,484,930		21,484,930
준공업지역	29,076,533		29,076,533
자연녹지지역	310,742,316.1	감 12,980	310,729,336.1
생산녹지지역	3,943,963	감 236,815	3,707,148

나.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양천구청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끝.



신정제 6

양

洞

신정

가정

신정수지서역

자연수지서역

신정수지서역

62



변경

일부 주거지역

新 洞

洞

道

62-1